



## 24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 보고

제108회기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장재덕  
서 기 김종수

### 1. 조직

- 위원장: 장재덕
- 회 계: 박석만
- 위 원: 박 건 김종수
- 서 기: 김종수

### 2. 회의

#### 1) 제1차 회의

- ☞ 일 시: 2023. 11. 1.(수) 10:00
- ☞ 장 소: 비대면회의
- ☞ 결의사항
  - ① 임원 조직은 위원장 장재덕 목사, 서기 김종수 목사, 회계 박석만 장로로 하기로 하다.
  - ② 차기회의는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1시에 대전노회사무실에서 하기로 하다.

#### 2) 제2차 회의

- ☞ 일 시: 2023. 11. 14.(화) 11:00
- ☞ 장 소: 대전노회사무실
- ☞ 결의사항
  - ①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의 건을 확인하다.
  - ② 대전노회에서 현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 시행 청원 현의서'의 상세 내용을 대전노회 노회장 김정민 목사, 서기 임왕규 목사, 대전남부교회 류명렬 목사, 서기영 장로가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하고 제출서류는 대전노회에서 총회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접수 후 본 위원회에서 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 ③ 차기회의는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에 화상회의로 하기로 하다.

#### 3) 제3차 회의

- ☞ 일 시: 2023. 12. 7.(목) 10:00
- ☞ 장 소: 비대면회의
- ☞ 결의사항
  - ① 대전노회에서 본 위원회로 직접 전달한 서류 내용을 확인 및 논의하고 대전노회로 하여금 총회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접수토록 요청하다.
  - ②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받은 수임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총회에 아래의 자료를

2023년 12월 22일(금)까지 요청하기로 하다.

가.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전체 사본

나. 오산비전교회(구 가장교회) 및 노병선 장로 관련 재판국 자료 사본

③ 경기수원노회에 아래의 자료를 2023년 12월 22일(금)까지 요청하기로 하다.

가.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가입당시 자료와 노병선 장로가 장로부총회장으로 입후보 추천 받은 노회록 사본

④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에 아래의 자료를 2023년 12월 22일(금)까지 요청하기로 하다.

가. 노병선 장로가 장로부총회장으로 입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한 장로무흠증명서, 장로임직증명서 사본과 장로부총회장으로 추천한 당회록 사본

⑤ 차기회의는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에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 4) 제4차 회의

☞ 일 시: 2024. 1. 16.(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와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니 차기회의에 내용 정리 및 논의 하기로 하다.

②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받은 수임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2024년 1월 25일(목)까지 요청하기로 하다.

가. 서경노회: 노병선 장로 면직, 제명, 출교 관련 자료 사본, 및 현 오산비전교회(구 가장교회)의 재판 자료 사본

나. 총회: 대전노회 및 서기영 장로가 총회에 접수한 서류에 대한 처리 확인 자료

③ 차기회의의 일정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5) 제5차 회의

☞ 일 시: 2024. 2. 14.(수) 11: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① 총회와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에 요청한 자료를 논의하다.

②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받은 수임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차기회의에 아래의 관련자들을 회의에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

가. 대전노회: 대전노회 노회장(서기), 서기영 장로

나. 서경노회: 서경노회 노회장(서기), 당시 노회 재판국장(국원)

③ 차기회의는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 6) 제6차 회의

☞ 일 시: 2024. 3. 7.(목)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받은 수임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아래의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 요청하여 경위를 듣다.



가. 오전: 대전노회 노회장 유영범 목사, 서기영 장로

나. 오후: 서경노회 노회장 김철희 목사, 서기 황태성 목사

② 차기회의에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받은 수임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아래의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

가. 오전: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김남희 목사, 노병선 장로

나. 오후: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회록서기 박재신 목사

③ 차기회의는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총회회의실에서하기로 하다.

## 7) 제7차 회의

☞ 일 시: 2024. 5. 2.(목)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받은 수임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김남희 목사, 노병선 장로,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회록서기 박재신 목사를 회의에 참석 요청하였지만 참석하지 않다.

② 차기회의에 제109회 총회에 보고 할 내용을 결론 취합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③ 차기회의는 2024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에 총회회의실에서하기로 하다.

## 8) 제8차 회의

☞ 일 시: 2024. 5. 30.(목)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제109회 총회 보고내용을 서기 김종수 목사가 보고하니 정리 후 차기 회의에 결정하기로 하다.

② 차기회의는 2024년 7월 4일(목) 오전 11시에 총회회의실에서하기로 하다.

## 9) 제9차 회의

☞ 일 시: 2024. 7. 4.(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서기 김종수 목사가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 최종 보고 내용을 보고하니 내용 추가 및 수정은 위원장 장재덕 목사와 서기 김종수 목사에게 일임하여 정리하기로 하다.

##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 최종 보고

### 1. 제108회 총회 수입사항

대전노회 헌의안으로 제106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 노병선 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장로 무흠증명서와 임직증명서등 자격 문제의 사실확인과 (장로 부총회장 후보 서기영 씨)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시정처리 하라는 헌의 건

### 2. 처리 내용

본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 요청 하였습니다.

- 1) 헌의안을 제출한 대전노회장과 당사자 서기영 장로를 회의에 참석 요청하여 사실 확인에 대하여 헌의안에 대한 답변과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았습니다.
- 2) 서경노회에 당시 노병선 장로에 대한 치리건의 재판기록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서경노회의 결의로 모든 노회 기록을 노회결의 없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 3) 헌의안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노병선 장로를 회의 참석 요청하였으나 참석 하지 않았고 시무장로를 사직하였습니다.
- 4)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회록서기 및 심의분과장이었던 박재신 목사를 회의 참석 요청하였으나 참석 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결정으로 시행된 사항임을 전달받았습니다.
- 5) 노병선 장로가 장로부총회장에 입후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서류로 제출한 무흠증명서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오산비전교회 당회장을 회의 참석 요청하였지만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 6)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노병선 장로가 제출한 입후보등록 서류를 총회에 요청하였지만 선거규정 부칙에 의거 파쇄 폐기함으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7) 총회에 해당 건에 대한 재판국 판결문 97회, 98회 조서 기록을 열람하려 했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 받고 10년이 경과한 자료로 찾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회의 참석 요청에 불응 하고 자료의 미비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부자료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노병선 장로는 (구)가장교회 시무장로로 제직 중에 소속노회인 서경노회를 2010년 1월 17일 탈퇴함으로 서경노회로부터 제11회 정기회에서 재판국 판결로 노병선, 신문식 장로는 면직 제명 출교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총회재판국에 행정소원을 하게 됩니다. 권징조례 제9장에 상소하는 규례에 의하면 신문식 외 99명의 제명, 출교의 행정소원은 소원기일 10일을 도과한 사건으로 소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하회인 서경노회의 재판국 판결이 부당할 경우 그 노회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소원기일이 10일 도과한 후에 사건을 받아 재판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원 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재판국원도 이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노병선 장로에 대하여 서경노회 재판국 판결문대로 시벌이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시 가장교회의 행적을 보면 (구)가장교회는 오산비전교회로 개명을 하게 되고 서경노회의 허락도 없이 지역노회인 서수원노회로 이명이적하게 됩니다. 총회 86회 결의문에 따르면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한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한다.” 라는 결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명하는데 있어 소속노회의 이명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서수원노회로 이명 이적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후 서수원노회가 분립하여 경기수원노회에 속하게 되었고 제61회 경기수원노회 정기회에서 노병선 장로가 제출한 제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추대 청원의 건이 가결되게 됩니다.

위의 건에 의거 서기영 장로는 당시 장로부총회장 후보인 노병선 장로는 총회 재판국이 행정소원을 10일이 도과한 것을 다루었기에 무효로 시무장로 면직된 상태로 다시 장로장립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기에 무효이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로 공문을 발송해 장로장립을 받은 문서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여 노병선 장로는 무효의 서류위조와 장로부총회장 후보자격이 없음을 이의제기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자 사회법에 소송을 한 것입니다.

사회법에 소송한 서기영 장로는 당시 선거규정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9항 “교회, 노회 및 총회에 관한 소송 건으로 교단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법에 가처분, 가압류 등을 포함한 민, 형사상의 소송(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패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장로부총회장 후보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장로부총회장 후보 노병선 장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직전날인 2021년 9월 12일(주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서기영 장로 본인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집행을 보면 현재와 당시 선거규정에 동일하게 제20조(등록금 관리) 1항 “입후보자들의 등록금은 총회와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항 “위원회 제반 관리비용은 총회 경상회계 예산으로 사용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입후보 등록한 후보들의 등록금은 총회와 해기관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금을 사용하면 안 되며 오로지 총회 경상 회계 예산으로 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비 사용처에 대해 앞으로 감사부의 회계감사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3. 최종 결론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는 자료의 미비와 회의 참석 요청 불응, 당사자의 시무장로 사직(은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시 재판에 사용한 자료에 근거 위 처리 내용과 같이 사실 확인을 하여 결론 보고를 드립니다.

- 1) 서기영 장로가 제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 등록금으로 납부한 발전기금은 선거규정에 의거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서기영 장로에 대한 시벌은 무효로 합니다.
- 3) 서기영 장로와 관련된 총회의 재판 비용은 총회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 4) 위 3)을 위해 법무법인 평강 오하람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대리 위임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대전노회의 확인서 요청을 발급해야 합니다.

##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서기영 장로가 요청한 제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등록 발전기금은 반환하지 않고 총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2) 본 위원회가 사실확인을 위해 회의 참석 요청을 했으나 불응 및 자료 미제출을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는 총회의 결의와 총회, 특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총대 천서 제한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경고 처리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3) 본 건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 4) 서기영 장로에 대한 시벌을 무효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5) 서기영 장로와 관련된 총회의 재판 비용을 총회가 서기영 장로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 6) 위 5)을 위해 법무법인 평강 오하람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대리 위임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대전노회의 확인서 요청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

위원장 장 재 덕

서 기 김 중 수